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9.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

나.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시 부칙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불리한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 수정

-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 보완 · 수정
- 용어의 의미 명확화, 법령 용어의 순화

나. 구미시 조례 제838호 부칙 제2조 삭제

-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 2010. 7. 1.)에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아파트 뿐 만 아니라 정비구역을 신청한 아파트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 제2조 삭제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관련법령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제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제12조제3항”으로, “신청하는”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본틀”을 “기본 틀”로, “1이하이고”를 “1 이하이고”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이하이고”를 “1 이하이고”로, “제14조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유고시”를 “유고 시”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부의”를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8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누설하여”를 “누설해”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을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하였을”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에 따른”으로, “제33조의 규정에”를 “제33조에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유고시”를 “유고 시”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출시”를 “제출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착공신고 시”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착공신고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반환하는”을 “반환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을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내”를 “부지 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농지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제56조에 의한”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교부할”을 “내줄”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비율이”를 “비율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24조제4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24조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제5호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사법」에 의한”을 “「건축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대지안의 조경)”을 “(대지 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지안”을 “대지 안”으로, “2,000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0제곱미터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설치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 설치 시”로, “산정시”를 “산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지나 수목”을 “수목”으로, “대지에 있어”를 “대지에”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이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로, “를”을 “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피로티”를 “필로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로티”를 “필로티”로, “1이하”를 “1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0룩스”를 “50릭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에 따른”으로,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0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를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로,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피로티”를 “필로티”로,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제80조의2의 규정에”를 “제80조의2에 따라”로, “기준”을 “기준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81조제1항제2호”로, “대지에 한하여”를 “대지에서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1이상”을 각각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로측”을 “도로 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측”을 “도로 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대측”을 “반대 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8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5조의2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로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9조 규정에 맞벽 건축기준에”를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부과할수”를 “부과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을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으로, “화물만재시”를 “화물만재 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5조에 의한”을 “제6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00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0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정시”를 “책정 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한다.

조례 제838호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3·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2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u>	• 0.5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u>않는</u> 건축물	법 제2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법 제2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금액
3. <u>대지 안의</u>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금액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u>않는</u> 건축물	법 제4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
5. <u>그 밖에</u>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시행에</u> ----- ----- -----.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구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 - 제5조제4항에 따라 ----- -----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u>규정에 의한</u>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u>제5조제4항에 따른</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16조의 <u>규정에 의한</u>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 -----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u>규정에 의한</u> 적용 대상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부의</u> 하는 사항	5. <u>그 밖에</u> ----- ----- <u>회의</u> <u>의에</u> 부치는 -----

현행	개정안
② 이미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변경 및 기존건축물의 변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계획의 기본틀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이고 1개층 이하 범위내의 층수 변경.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이고 최고 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및 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축. 다만, 외부 형태 및 색채가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생략)	② ----- ----- ----- ----- ----- -----. 1. ----- 제12조제3항----- - 신청할 ----- ----- 2.----- 기본틀----- ----- ----- 1이하이고----- 범위내----- -----. 3.----- ----- ----- 1이하이고----- ----- 제14조에 따른 -----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③·④ (생략)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기타</u>,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u>유고시</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u>부의</u>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5.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유고 시</u> ----- -----. 제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회의에 부치는</u> ----- -----. -----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u>당해</u>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 ----- ----- <u>해당</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이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⑧ ----- ----- -----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에서 ----- <u>따른다</u>.
제9조(소위원회) ① ~ ④ (생략)	제9조(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8조 및 <u>제10조 내지 제14조</u>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 <u>제10조부터 제14조까지</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u>제8조</u>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 <u>제8조에 따라</u>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 ----- -----.

현행	개정안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u>기타</u>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u>누설하여</u> 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 준수) ----- -- <u>그 밖에</u> ----- ----- ----- <u>누설해</u> ----- -----.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u>운영</u> 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운영규정) ----- ----- <u>운</u> <u>영에</u> ----- -----.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u>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 <u>제5조 제1항에 따른</u> ----- ----- ----- -----.
② 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u>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u>기타</u> 부득이한 경우에는 <u>30일 이내</u> 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u>제1항에 따라</u>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 <u>제5조 제2항에 따른</u> ----- ----- ----- ----- ----- ----- ----- <u>그 밖</u> <u>에</u> ----- <u>30일 이</u> <u>내</u> ----- -----.

현행	개정안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제10조제6항에 따른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u>당해</u> 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u>유고시</u>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2. ----- ----- ----- ----- ----- <u>해당</u> ----- -----. ----- <u>유고 시</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 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 공장,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가축시설, 도축장, 도 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제13조제2항 에 따라 ----- ----- ----- ----- ----- ----- ----- ----- ----- -----.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13조제4항에 따른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 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 제출 시 ----- ----- ----- ----- ----- -----.

현행	개정안
3. 예치금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착공신고시 예치하여야 한다.	3. ----- ----- -----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착공신고시 -----.
4.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주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 반환한다.	4.----- 반환할 ----- ----- ----- .----- ----- ----- ----- -----.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잠실, 기타 농·어업용 건축물	2. ----- ----- 그 밖의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제10조제1항에 따라 ----- ----- 제83조에 따른 ----- ----- ----- -----.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제20조 제1항에 따라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 부지 내-----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20제곱미터 이내의 농막.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으로서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구조에 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이 아닐 것	6. ----- ----- ----- . ----- 「농지법 시행령」 ----- ----- ----- ----- -- 제56조에 따른 ----- -----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 단서----- ----- ----- ----- ----- 제2조제5호에 따른 ----- ----- ----- ----- ----- .----- ----- ----- ----- ----- 내줄 -----.

현행	개정안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 ----- -----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 ----- ----- --.
1. 법 제11조,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 전 현장조사 및 검사	1. ----- ----- 제29조에 따른 ----- ----- ---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 제16조에 따른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다만,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한 자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2조에 따른 ----- ----- -----. 해당 ----- ----- ----- ----- ----- ----- ----- ----- ----- ----- -----.
5.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 ----- -----

현행	개정안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 ----- 제21조 제3항에 따라 -----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비율로 ----- 따른다.
1.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협의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 적용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2. 제24조제4호에 따라 ----- ----- ----- ----- -----

현행	개정안
3.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시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 : 30퍼 센트 4. 제24조제5호 규정에 의한 현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 ③ 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 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 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 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 한 1·2종 시설물과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의 적 용을 받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2. (생략)	3. 제24조제4호에 따라 ----- ----- ----- 4. 제24조제5호에 따른 ----- ----- ----- ③ ----- 따른 ----- ----- -----.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3조제2항에 따른 ----- ----- ----- ----- ----- -.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 종 시설물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을 제외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 ----- -----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5. 그 밖에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 ----- -----.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 -- 제42조제1항에 따라 ----- ----- ----- -----.

현행	개정안
1. 연면적(동일 <u>대지</u>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u>2,000제곱미터</u>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1. ----- <u>대지</u> 안----- ----- ----- ----- <u>2천제곱미터</u> ----- ----- -----
2. 연면적이 <u>1,000제곱미터</u> 이상 <u>2,000제곱미터</u>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 <u>1천제곱미터</u> 이상 <u>2천제곱미터</u> ----- -----
3. 연면적이 <u>1,000제곱미터</u>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 <u>1천제곱미터</u> ----- ----- -----
4. <u>200제곱미터</u>이상 <u>300제곱미터</u>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u>200제곱미터</u> 이상 ----- ----- ----- -----
②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조경 설치</u>시 도로에 접한 조경공간으로서 도로에 접한 길이의 폭만큼의 조경면적에 대하여 법정조경면적 <u>산정</u>시 실제 조경면적의 1.5배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접한 조경공간 길이가 3미터 이상일 때에 한한다.	② -- 제42조제1항에 따른 <u>조경 설치</u> 시 ----- ----- ----- ----- <u>산정</u> 시 ----- ----- ----- -----.

현행	개정안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2. (생략) 3.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4. (생략) 제29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 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 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파고라, 환경조형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수목이 생장토록 지반조성을 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③ -----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조에 따른 ----- 4. (현행과 같음) 제29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① - - 제42조제1항에 따른 ----- ----- ----- -----. 1. (현행과 같음) 2. 수목----- 대 지에----- -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 적의 100분의 50 이하----- ----- ----- ----- ----- -----.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이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조경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하여야 하는 수종·수량 및 식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u>의한다</u>.	② ----- ----- <u>제1항에 따른</u> ----- ----- ----- ----- -----. ③ ----- ----- ----- ----- <u>따른다</u>.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u>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u>에 의하여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u>제27조의2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 <u>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u> ----- -----<u>을</u>----- ----- ----- ----- ----- -----. ② -- <u>제27조의2제2항에 따라</u> - -----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등은 전면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할 것. 다만, <u>피로티</u>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u>피로티</u>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이하로서 유효높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5. 조경·벤치·파고라·분수·식수대·조도 <u>50룩스</u> 이상의 조명시설·조형물 등 미술품·소규모 공중화장실(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이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③ --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 ----- -----. 1. (현행과 같음) 2. ----- ----- -----. <u>필로티</u> ----- -----. 3. (현행과 같음) 4. <u>필로티</u> ----- ----- ----- <u>1 이하</u> ----- -----. 5. ----- ----- <u>50룩스</u> ----- ----- ----- ----- ----- ----- -----

현행	개정안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 ----- ----- -----.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1. ---- 제56조에 따른 ----- ----- ----- 해당 지역----- -----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 제60조에 따른 ----- ----- ----- -- 해당 ----- -----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3. -----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 ----- 대 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 -----필 로티 ----- ----- 포함하여 계산한다.

현행	개정안
제32조(도로의 지정) ① <u>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출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u>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 4. (생략) 5. <u>제1호 내지 제4호에</u>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도로의 지정) ① -- <u>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u>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 -----.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 <u>제80조에 따라</u>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u> ----- -----

현행	개정안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 ----- 제80조의2에 따라 ---- ----- ----- ----- ----- ----- 기준은 ----- - 따른다.----- ----- -----.
제35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맞벽 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맞벽 건축) ① -- 제81조 제1항제2호----- ----- ---- 대지에서만 ----- --.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② ----- ----- --. ----- 그----- -----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닐 것	1. ----- ----- 제2호에 따른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6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u>단서의</u>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분에 대하여 전면 도로의 너비 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u>1이</u> <u>상</u>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 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u>1이상</u> 접한 도로 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 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u>단서</u> ----- ----- ----- ----- ----- <u>1 이상</u> ----- ----- ----- ----- <u>1 이상</u> ----- ----- -----.
1. 가장 넓은 <u>도로측</u> 의 대지경 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 터 이내의 부분	1. ----- <u>도로 측</u> -----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 분에 <u>대하여는 당해</u> 전면도로 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2. ----- ----- <u>대해서는 그</u>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 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에서 넓은 <u>도로측</u> 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3. ----- ----- ----- ----- <u>도로</u> <u>측</u> ----- -----

현행	개정안
②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u>반대측</u>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 ----- <u>반대 측</u> ----- ----- ----- ----- ----- -----.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 제60조 제3항에 따른 ----- ----- ----- ----- -----.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제86조제1항에 따라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대지 사이에 도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86조제1항에 따라 ---- ----- ----- ----- ----- ----- ----- ----- ----- ----- -----.
③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 단서---- ----- ----- ----- ----- -----.

현행	개정안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 ----- -----. ② --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 ----- -----경우란----- -----. 1. --- 제21조에 따른 ----- -----

현행	개정안
2. 법 제59조 규정에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④ 영 제11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별표 15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 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4. (생략)	2. ---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 ③ ----- 단서----- ----- 부과할수 ----- -----. ④ ----- ----- 제13호에 따른 ---- ----- -----. 제3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 ----- -----. 1. ----- ----- 그 밖 에 ----- 2. ----- ----- ----- 그 밖에 ----- 3.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u>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u>”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u>화물만재시</u>의 하중으로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u>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u>”이란 ----- ----- ----- ----- ----- ----- <u>화물만재 시</u>----- ----- <u>그 밖에</u> ----- -----.
제40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u>당해</u>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0조(건축상) ① ----- ----- ----- ----- <u>해당</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41조(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① ----- <u>제65조에 따른</u> ----- ----- -----.

현 행	개 정 안
1. 구미시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u>2,000제곱미터</u>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2. 민간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u>3,000제곱미터</u>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 건축물 사업 추진 시 친환경 설계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행과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u>책정시</u>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u>대하여는</u>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11에 따른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 ----- ----- <u>2천제곱미터</u> ----- ----- -----. 2. ----- ----- <u>3천제곱미터</u> ----- ----- ----- -----. ② ----- ----- ----- ----- ----- <u>책정 시</u> ----- -----. 제42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 ----- ----- <u>대해서는</u> ----- ----- ----- -----.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u>의한</u> 인증비용 지원 기준 등에 <u>대하여는</u>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838호 구미시 건축 조례 부칙 제2조(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 제1호마목과 제2호마목의 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th></tr> </thead> <tbody> <tr> <td>가.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td><td>(생략)</td></tr> <tr> <td>나.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td><td>(생략)</td></tr> <tr> <td>다.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td><td>(생략)</td></tr> <tr> <td>라. (생략)</td><td>(생략)</td></tr> <tr> <td>마. (생략)</td><td>(생략)</td></tr> <tr> <td>바. <u>가목 내지 마목</u>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td><td>(생략)</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생략)	나.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생략)	다.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생략)	(생략)	바. <u>가목 내지 마목</u>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생략)	② ----- <u>따른</u> ----- ----- <u>대해서는</u> ----- -----. 조례 제838호 구미시 건축 조례 부칙 제2조 <삭 제>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th></tr> </thead> <tbody> <tr> <td>가.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td><td>(생략)</td></tr> <tr> <td>나.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td><td>(생략)</td></tr> <tr> <td>다.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td><td>(생략)</td></tr> <tr> <td>라. (생략)</td><td>(생략)</td></tr> <tr> <td>마. (생략)</td><td>(생략)</td></tr> <tr> <td>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u>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td><td>(생략)</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생략)	나.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생략)	다.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생략)	(생략)	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u>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생략)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생략)																												
나.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생략)																												
다. <u>당해</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생략)	(생략)																												
바. <u>가목 내지 마목</u>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생략)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생략)																												
나.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생략)																												
다. <u>해당</u>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생략)	(생략)																												
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u>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생략)																												

현행

개정안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생략)	(생략)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생략)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생략)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 시설, 위탁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생략)
마. (생략)	(생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생략)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생략)	(생략)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생략)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생략)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 시설, 위탁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생략)
마. (생략)	(생략)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생략)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u>아니한</u> 건축물	법 제20조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3. 대지안의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한 건축물	법 제42조	(생략)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u>아니한</u> 건축물	법 제43조	(생략)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생략)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u>않는</u> 건축물	법 제20조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3. 대지 안의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한 건축물	법 제42조	(생략)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u>않는</u> 건축물	법 제43조	(생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생략)